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458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 고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변 론 종 결	2020. 3. 19.
판 결 선 고	2020. 4.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게 한 취득세 7,629,170원 및 지방교육세 653,920원의 징수처분(각 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1. 부친인 B으로부터 [redacted]구 C 토지 및 그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에 관한 취득세 7,595,000원, 지방교육세 651,000원을 신고하였다.

나. 원고가 위 신고행위에 따른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9. 5. 13.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7,629,170원 및 지방교육세 653,920원의 징수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B은 2019. 4. 29.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2019. 7. 2.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4, 8,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위임도 받지 아니한 채 오히려 B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B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증여되지 않았고, 이후 D에게 양도되었다. 그럼에도 원고는 사회생활 경험이 부족하여 취득세 신고를 철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원고의 취득세 등 신고행위는 B과의 증여의사의 합치가 없어 무효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의한 것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아니하는바, 원고의 위 신고행위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가 승계된 이 사건 처분 역시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

따라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동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발생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67264, 6727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는 원고가 2019. 2. 21. 부친인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작성권한 없이 임의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증여계약서는 B의 인장이 유효하게 날인되어 있고, 달리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기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대하여 2019. 2. 21. 강북구청장으로부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까지 마쳤다. 반면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처분문서인 이 사건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와 B 사이의 증여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된다.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이후 원고가 아닌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B의 장남으로서 B을 간병하며 함께 거주하였고, B이 언젠가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증여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후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된 것은 원고와 B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증여계약이 합의해제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일 뿐인바, 이러한 합의해제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③ B이 2019. 4. 29.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유효하게 체결한 점을 감안하면, 2018. 1. 18.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B에 대한 의사소견서(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서 작성 당시 B의 정신건강 상태가 그리 좋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그 무렵 B의 의사능력이 부존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10-29

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끝.